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Korea | Tax | 4 November 2026



Korean Tax Newsletter

4 November 2026

CONTENTS

세무동향

- 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 국세청,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예규판례

○ 법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이연된 주식교환 양도차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 비상장주식 평가 시 1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상증칙 §17 의 3① 각 호)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 대학병원 전임교원(의과대학 학생 지도 및 진료를 겸임하는 교수)의 보수를 수익사업인 의료업에 종사한 대가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5 년 이내 상장되었으나 취득 당시 상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거나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41 의 3) 과세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베트남 자회사 파견·출장 임직원의 업무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베트남에 원천징수·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상증세법 §47) 준용에 관한 사안

○ 행정안전부

-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어느 하나의 지자체에만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한 경우 지방세법상 무신고가산세 경감 적용 범위

○ **국세청**

■ 해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만을 이용하는 선불형 해외사용 유심 및 이심을 국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세무동향

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59 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10.1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AI 기업 세정지원 ('26.10.1.~'28.2.28.)

- (세무검증 최소화) AI 스타트업(창업 5 년 이내)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성장 단계별 구분지원
  *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2 년간 유예(지방 소재 기업 3 년)
- (R&D 등 지원)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우선 처리
-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
- (세무쟁점 상담) 홈택스 AI 중소기업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세제혜택 등 안내, 애로사항 수집 제도개선)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정부는 그간 베트남 진출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해결됐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겪어온 유동성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10.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내국수출입제도 개요**

- 한국의 내국신용장제도와 비슷한 제도로서,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안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주는 제도
- 내국수출입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거래과정에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부담 측면에서 중요

○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 발생**

- 베트남이 '15 년 내국수출입제도를 도입한 이래 '22 년까지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베트남 관세국은 '22.12 월과 '23.5 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경우 내국수출입제도 적용을 제한
- 이에 우리 정부(국세청, 산업부,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그 결과 '25 년 7 월 내국수출입제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베트남의 법률 및 시행령에 반영되었으나, 베트남 당국은 해당 법률의 장래효만 인정

○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 및 후속 이행 노력**

- 국세청은 '26.6 월 개최된 제 25 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이외 적극적인 외교의 결과, '26.9 월 베트남 과세당국은 세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지방 세무국에 하달

국세청,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국세청은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 사업연도 법인세와 '25 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10.2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은 '27 년 상시근로자 수를 '26 년보다 2%~3%(최소 1 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으로, '25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 억 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 억 원~1,800 억 원이면 3% 이상 증가하여야 함
-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 세)인 상시근로자 1 명을 고용하면 2 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 1 명을 고용하면 2 명을 고용한 것으로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하여 청년 고용과 청년 기업을 우대
- 일반 중소기업이 고령자(60 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 고용처럼 2 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우대

○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 투자확대 세정지원 대상은 '27 년 투자금액을 '26 년보다 5%~20% 이상 증가시키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하여 투자금액 기준비율을 다르게 적용
-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25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 억 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 억 원~1,800 억 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p 낮은 5%(수입금액 500 억 원 미만), 15%(수입금액 500 억 원~1,800 억 원)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하여야 함
-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 기준비율을 적용하여 세정지원을 실시

○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됨
- 계획서는 11 월 2 일 ~ 11 월 30 일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대상에 해당함에도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여 '25 사업연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8 년에 '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

예규판례

[법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이연된 주식교환 양도차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 두 30733 판결, 상고기각)

■ 쟁점

1.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
2.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 152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본문의 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의미가 아니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소극)

■ 사안

원고는 A 회사에 B 회사의 주식 전부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하여 이전하고, A 회사로부터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았는데, 원고는 위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 152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38 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 한편, 위 주식양도차익을 자본잉여금(이하 '이 사건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주주들은 무상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주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본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등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 127 조 제 1 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의 하나로 '배당소득'(제 2 호)을 들고 있고, 제 17 조 제 1 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 1 호), '의제배당'(제 3 호) 등을 들고 있음.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그 형식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음(대법원 1991. 9. 10. 선고 91 다 1056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 누 2154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2 항은 그 각 호에서 의제배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 2 호 본문은 그중 하나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법령은 '잉여금'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잉여금은 회사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액수라는 기업회계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상법 제 287 조의 37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 20 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본문의 '잉여금'은 위와 같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원심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별 규정들에서 사용되는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잉여금을 뜻한다고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본문의 '잉여금'은 세무조정을 거치기 전의 회계·상법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38 조에 따라 이 사건 잉여금에 대해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업경영의 성과인 이 사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원고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본문의 '잉여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법원] 비상장주식 평가 시 1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상증칙 §17 의 3① 각 호)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 두 30964 판결, 상고기각)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 3039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 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부분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1 항에 따른 가액을 배제하고 제 2 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 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 조의 3 제 1 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1 항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제 2 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그 경우의 평가방법 및 예외적으로 제 1 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관한 위 법리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9 조 제 3 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사안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1 항의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3 제 1 항 제 6 호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1 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2 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의 법문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 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이라는 부분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제 1 항 가액이 아닌 제 2 항 가액에 의하여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들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 제 1 항 가액이 배제되어 제 2 항 가액이 적용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2 항 제 1 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3 제 1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서 위 각 사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함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3 제 1 항 각호는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항 가액인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 이러한 법리는 제 2 항 가액인 '1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 2 항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 2 항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 1 항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임(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 두 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 두 31253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3 제 1 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가액에 따라 다시 1 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 1 항 가액이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임에도 여전히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3 제 1 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제 1 항 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9 조 제 3 항은,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 5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들은 위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조세심판원] 대학병원 전임교원(의과대학 학생 지도 및 진료를 겸임하는 교수)의 보수를 수익사업인 의료업에 종사한 대가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 지 0358, 2026.8.12., 취소)

■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전임교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학교병원 소속 전임교원들(의과대학 학생을 지도하면서 진료를 겸임하는 교수로서, 이하 "이 건 전임교원들"이라 한다)에 지급한 급여는 형식적으로 ○○○대학교병원과 ○○○대학교가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학교병원이 상당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학교병원이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대학교를 통하여 이 건 전임교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8 년 9 월분부터 2023 년 7 월분까지의 급여액인 OOO 원(이하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3.10.5. 주민세(종업원분) OOO 원 및 2023.11.21. 주민세(종업원분) OOO 원 합계 OOO 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이 건 전임교원들의 수익사업인 의료업에 종사한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주민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대학교병원이 이 건 전임교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전임교원들의 임상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의과대학의 정교수, 부교수 등으로 임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다른 단과대학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부속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하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이를 참관하도록 하거나, 각종 수련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법원은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의 재원이 되는 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주민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점(서울고등법원 2009.12.8. 선고 2009 누 12442 판결, 대법원 2010.4.15.자 2010 두 573 판결), 아울러 이 건 전임교원들은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 등을 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된 직무에 따라야 하는데, 이 건 전임교원들의 직무상 특수성(임상경험과 연구활동의 불가분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전임교원들의 주된 직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소속 교원들에게 지급한 학생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1 조 제 3 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주민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4 지 292, 2026.6.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5 년 이내 상장되었으나 취득 당시 상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거나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41 의 3) 과세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 서 0542, 2026.8.13., 취소)

■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 년 이내에 상장되어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인 AAA 과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 AA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 년에 설립되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서 실제 촬영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이나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작업,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및 관련 솔루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CC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의 직원들로서, 2016.5.18.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DD 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 주(지분율 0.8%, 이하 “쟁점주식”)를 OOO 원(1 주당 OOO 원)에 각 취득(이하 “이 건 거래”)하였고, 쟁점법인은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충족하여 2021.3.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음

청구인들은 2021.9.30.「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 41 조의 3(이하 “쟁점규정”)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OOO 원)을 DDD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3.26. ~ 2021.6.24.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청구인들은 ① 쟁점주식 취득 당시 쟁점법인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거나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② 설령, 이 건 거래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청구인들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에게 10%의 신고세액공제 적용은 인용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각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 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3.30. 선고 2016 두 55926 판결, 조심 2021 서 6914, 2022.12.5., 같은 뜻임), 이러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쟁점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2015 사업연도 결산 기준)도 OOO 원 수준에 불과했던 점,

쟁점법인은 일정 수준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상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기업 상장이 아닌 특화된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기술성장기업의 혁신기술 트랙 절차를 통해 상장되었는바,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2016.5.18.)한 이후인 2017.2.14. GGG(주)을 상장 주관사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2016.11.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 2019.7.29.부터 쟁점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하여 2020.4.10. 최초로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그 후 2020.7.17., 2020.7.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각각 BBB 등급과 A 등급의 기술평가를 받아, 이를 토대로 하여 기술성장기업의 혁신기술 트랙 절차를 통해 2021.3.24.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DD와 청구인들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주주와 사용인 관계에 불과하여 DDD와 청구인들 간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DDD 가 청구인들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기보다는 DDD 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상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거나,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베트남 자회사 파견·출장 임직원의 업무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베트남에 원천징수·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 서 1014, 2026.8.18., 취소)

■ 쟁점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는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21 년부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에 AAA.(이하 "쟁점자회사")를 설립하여 쟁점자회사로 하여금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후 청구법인과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소재의 거래처(이하 "쟁점외거래처")에게 납품(이하 청구법인과 쟁점외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도록 하고, 쟁점외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대금을 송금할 때 베트남 세법에 따라 해당 대금의 1% 상당액을 외국인계약자세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2022·2023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신고시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25.8.7. 청구법인 소속의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법인장 등으로 파견·상주하거나 출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상주 또는 출장하는 장소(이하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아래 2022·2023 사업연도 국외원천소득 합계 OOO 원(이하 "쟁점소득")이 쟁점장소에 귀속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합계 OOO 원(이하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쟁점세액 상당의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7 조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약 제 5 조 제 1 항에서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 5 항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7 조에 따라 베트남은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베트남 내 매출처가 원천징수·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7 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23 조 제 1 항 및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1, 2018.2.6.,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쟁점거래의 중요한 부분(원·부자재의 매입, 제조한 물품의 판매계약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쟁점장소에 소재한 쟁점자회사에 상주·파견되거나 출장하

여 수행하는 활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당 임직원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른 청구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쟁점자회사의 업무분장표, 주재원 수행업무 내역, 해당 임직원들의 업무 내역(수출입 품질인증, 무역 출하, 부품 구매 의뢰 및 제품검사 작업지도에 관한 것) 및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2022~2023 년 베트남 출장 내역]를 보면,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의 법인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거나 쟁점장소에 출장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외매입처 사이의 쟁점거래에 필요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 즉 쟁점자회사가 제조하여 쟁점외매입처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인도(delivery)와 더불어 품질 유지를 위한 업무(수출품 품질인증, 무역 출하, 출하 검사, 부품 구매 의뢰 및 제품검사의 작업 지도)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소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 5 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감심 2016-787, 2018.12.1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베트남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액 상당액만큼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 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상증세법 §47) 준용에 관한 사안

(조심 2026 소 1527, 2026.8.18., 취소)

■ 쟁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 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

청구인(거주자)은 2011.8.30. 청구인의 자녀인 A(비거주자)에게 경기도 OOO 호(이하 "국내부동산")를 증여(이하 "1 차증여")하였고, 수증자인 A 는 2011.11.30. 성남세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 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2011.8.30.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신고한 후, 2012.1.31. 이를 납부하였음

청구인은 2020.11.17. A 에게 미국 OOO 소재 주택(이하 "국외부동산")을 증여(이하 "2 차증여")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은 2021.1.6.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 17651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1 조에 따라 2 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하여 2020.11.17.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신고한 후, 2021.4.30. 이를 납부하였음

분당세무서장은 2025.9.9. A 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 176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7 조 제 2 항에 따라 A 가 10 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 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2 차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라 2 차증여분 증여세의 납부의무는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인계하였음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1 항, 제 4 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 조 제 2 항에 따라 1 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 OOO 원을 2 차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20.11.17.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준용이란 유사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반복하지 않고 한 세법에서 정한 내용을 다른 세법에서 그대로 적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정을 기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조심 2024 서 223, 2025.11.5.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 조 제 2 항에서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같은 법 제 4 조의 2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4 중 4548, 2015.4.16., 같은 뜻임),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1 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하면, 당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1 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1 조의 증여세는 법적 근거, 납세의무자, 재산의 범위 등이 서로 상이한 별개의 규율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4 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 조를 준용한다고 하여 재차증여시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이 양 법률의 증여세 과세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 국외부동산을 먼저 증여한 후 국내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먼저 증여한 국외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 조 제 2 항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바(조심 2014 중 4548, 2015.4.16. 참조), 이 건과 같이 국내부동산 증여 후 국외부동산을 증여하여 증여 순서를 달리한 경우에 대해 그 실질을 달리 볼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증여 순서의 차이만으로 세제상 효과의 유불리가 발생한다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1 차증여(2011.8.30.자 국내부동산의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2 차증여(2020.11.17.자 국외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합산대상이 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행정안전부]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어느 하나의 지자체에만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한 경우 지방세법상 무신고가산세 경감 적용 범위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705, 2026.6.17.)

■ 질의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대상인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 신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된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 103 조의 24(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경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 103 조의 24(수정신고 등) 제 3 항에서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2 항(안분세액 오류 정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 53 조부터 제 55 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6 항에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제 3 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산세 적용)고 규정하고, 이어서 "이 경우 제 3 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 53 조 제 1 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금액은 같은 법 제 53 조제 1 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제 6 항 후단 규정에서 "제 3 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부분에서 '제 3 항 후단'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제 6 항 후단에서 가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은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는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부과고지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세청] 해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만을 이용하는 선불형 해외사용 유심 및 이심을 국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부가-4342, 2026.9.14.)

■ 질의

국내 사업자가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외사용 유심(USIM)·이심(eSIM)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해외사용 유심(USIM) 거래 형태]

- 유형① 데이터용량, 사용가능국가, 사용기간이 세팅된 완제품 유심(USIM)을 현지 또는 국내·외 중개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함
- 유형② 플랜(요금제)이 없는 공카드(Blank SIM)를 국외 중개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선불 납부된 사용료를 기반으로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플랜을 세팅하여 고객에게 판매함
  *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 시 중개업체 제공 사이트에서 개통 처리됨

[해외사용 이심(eSIM) 거래 형태]

- 유형① 플랜이 세팅되어 있는 완제품 이심(eSIM)을 국외·국내 중개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판매함
  * 주문 수령 후 제공업체에 데이터용량, 사용가능국가, 사용기간이 포함된 코드를 전송하면 세팅된 QR Code 가 질의법인에 발송되며, 질의법인은 이를 고객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함
- 유형② 플랜이 없는 이심(eSIM)을 예치금 차감 방식으로 국외 제공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 플랜을 세팅하여 생성된 QR Code 를 고객에게 전송함

[공통 사항]

- 모든 유심 및 이심은 국외 통신사의 이동통신망만을 이용하며 사용 후 소멸하는 선불형 구조로, 질의법인이 판매 후 회수하거나 반납받지 아니함

회신

국내 사업자가 해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만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통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형 해외사용 유심(USIM) 및 이심(eSIM)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4 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Tax & Legal Leader	김경조 상무	정호석 회계사
+82 (2) 6676-2434	+82 (2) 6099-4279	+82 (2) 6099-4734
jikim@deloitte.com	kyungjokim@deloitte.com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